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 취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순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3. ~ 9.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의3의 제목 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각각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각각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의4의 제목 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각각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특허문서전자화

업무”를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로 한다.

제123조 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p>1. (생략)</p> <p>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3. (생략)</p> <p>②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p>	<p>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u>특허문서 전자화업무</u>----- -----</p>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

들 이상-----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

<삭 제>

⑤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 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0조의4(특허문서전자화기관
의 업무규정) ① 특허문서전자화 기관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0조의4(특허문서 전자화기관
의 업무규정) ① 법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하려는 -----
-----.

② -----

-----.

1.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 제

제12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4.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제123조(규제의 재검토) -----
----- 특
허문서 전자화기관-----

